

기업의 제품 책임

강신민·주용준

〈요약〉

기업의 제품책임(PL)은 사전책임(PLP)과 사후책임(PLD)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품책임에 대한 선진국 기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해보면 안전책임, 품질보증책임, 제품정보 공개책임, 피해보상 및 A/S, 제품책임 보험, 제품책임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ISO-9000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기업의 제품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1. 序論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마아케팅전략은 消費者保護라는 문제가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경영행위가 정부당국의 과보호하에서 온실속에서 이뤄졌고, 또한 이 문제가 소비자의 구매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는 소비자들이 구입전의 제품에 대한 약속과 제품구매후의 약속이 같은지 여부를 비교함으로써 차후의 그들의 제품구입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즉 판매후의 기업활동이 그 제품에 대한 추가적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조직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기업의 직접적인 製品責任과 간접적인 製品責任에 대한 불만으로 구분된다. 즉 직접적인 製品責任으로서 (1) 製品의 品質과 製品使用上の 安全 (2) A/S 및 修理·交換 (3) 製品에 관한 情報의 완전한 제공과 情報公開 (4) 製品으로 인한 財產上 및 身體上被害의 補償 (5) 製品에 관한 教育·啓蒙 등에 대한 不滿과 企業의 環境保護責任으로서의 產業廢棄物과 廢資源의 活用, 공해물질 배출 및 생산활동의 결과로 야기되는 각종 환경오염에 관한 不滿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당국의 製品責任에 관한 연구와 立法意志, 判例 등의 자료와 제도적 준비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당국에 長期消費者保護와 소비자만족(C/S)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ISO 9000에서 요구하는 제품책임에 관한 전략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製品責任의 意義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의 객관적인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實定法下에서는 그 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소비자 피해는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대량생산과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제사회의 특색을 반영한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계약의 자유와 과실책임의 원칙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私法理論으로서 각국에서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製造物 責任理論이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입은 신체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확립

을 도모하려는 시도이기도 한 것이다.

다른 한편 기업측에서 보면 국제무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식품, 의약품 및 소비자와 작업자(현장근로자)가 사용하는 각종 자본재 등의 시장이 점차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재화의 국제적 무역거래를 지배하는 통일된 국제 상법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기 시작한 국가간의 財貨販賣(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관한 UN협정(Vienna 협정: 1988년)이 발효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재화의 사용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을 통제할 만한 법률이 아직은 국가간에 배타적인 형태로 남아있고 이를 국제화 할 조짐은 아직 요원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製品責任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된 규제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국의 국내법에 맞추어 각기 다른 製品責任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남아 있는 것이다.

'製品 또는 製造物責任(PL: Products Liability)'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상품의 결함에 의하여 야기된 생명·신체·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를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製造業者 責任(Manufacturer'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또한 英·美에서는 生產物 責任이라고도 한다.

國際標準化機構(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의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인적 상해, 재산의 손상, 기타의 손해에 관련된 손실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생산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게 지워지는 책임을 뜻한다.

여기서 製造物이라 함은 완성품의 여부에 관계없이 또는 自然產物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통과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또한 製造者라 함은 제조물의 생산을 사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상표, 브랜드 또는 상호 기타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을 붙여서 이를 유통시키는 자, 제조물의 수입을 사업으로 하는 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가공자는 가공의 범위, 원재료의 제조자는 원재료가 미치는 범위, 부품의 제조자는 부품의 범위에 한하여 완성품 또는 本體의 제조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따라서 제조물 책임은 이와 같이 部品製造業者와 단순한 組立業者 등을 비롯한 각종의 제조자는 물론 제품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 관계한 도·소매상 등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공급자 책임(Supplier's Liability)이라고도 부른다. 그리므로 일반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침해를 준 결함있는 제품의 제조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損害賠償責任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결함이란 제조물의 통상 예견된 사용에 있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제조물의 결함(瑕疵)을 말한다. 그런데 결함이라고 할 때에는 제조물의 내부에 숨은 결함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좁은 뜻으로 제조물 책임은 현행의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을 제조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피해에 책임을 지는 過失責任에서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과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無過失責任(嚴格責任)으로 이행하여, 결함을 요건으로 구성하는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製造物 責任이라 한다.

위의 製品責任에 관한 정의들은 주로 2차산업 제품에 한정하여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의 정의를 더욱 확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하려면 1차산업과 3차산업(금융·서비스업), 4차산업(지식·정보산업)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전체산업의 모든 產出物(Outputs)의 생산, 유통, 판매행위를 총칭하여 製品責任으로 定義하고자 한다.

3. 製品責任의 重要性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마케팅에 관한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정부나 관계기관의 법적 규제나 이에 관한 標準設定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법률적 기준도 제품의 책임에 관한 제조업자의 義務條項을 다시 고려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별로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제품으로 인한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문제가 지금에는 매우 심각한 법적 起訴要件으로 선진국에서는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소비자측의 불만에 기인한 製品責任問題는 바로 제품의 품질과 안전(Product Safety)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제품의 안전문제는 우선 소비자의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상의 위험으로 유발되는 경제적·신체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기업측의 商標名聲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H 자동차의 미국에서의 제품책임 소송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벨트의 결함으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무려 1,300만불(약 100억원)에 이르는 바, 이는 중형차기준으로 1,000여대를 그냥 무료 제공한 결과와 같은 비용지출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 불만의 원인은 또한 消費者情報에 있어서의 문제, 즉 소비자의 기존 제품지식과 양적 및 복잡성의 증대로 인한 새로 요구되는 제품지식과의 격차 문제의 대두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시장경제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되고 있는 기술혁신에 의해 제품이 복잡하게 되고 제품특징이 빠르게 변화하게 되며 제품이나 상표, 모델등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신제품들은 소비자들이 평가하기 곤란한 숨은 질을 지니고 있고 제품자체의 복잡성때문에 소비자들은 그가 구매하고 있는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품구매에서 방황과 의심의 연속적이란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상 어떤 또는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절전형 냉장고와 페지형 냉장고의 차이점을 구별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製品責任과 관련된 消費者不滿의 또 다른 하나는 광고와 시장의 기능에 대한 반발이다. 즉 광고로 인한 혼란, 광고로 인한 공해 그리고 광고에 기인된 심리적 부담감, 비현실적인 기대감의 유발 등의 문제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을 형성함에 있어 기업측의 성실성과 책임감이 회박하고 시장의 기능과 광고의 기능 등 마케팅측면에 대한 소비자측의 견해와 기업가측의 관점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소비자의 불만은 제품의 사용효과가 소비자의 기대에 따르지 못하거나 약속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제품의 主機能과 副機能의 결핍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消費者不滿에 대비하여 기업측에서는 品質保證(QA)활동과 이에 따른 開發·設計 및 製造·檢查활동을 강화하고 제품의 사용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할 수 있는 공개에 의한 製品責任의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A/S 체계의 혁신과 운영방향에 관한 소비자중심의 사고혁신이 요구되며, 특히 製品責任에 관한 국내외 判例를 면밀히 검토·분석하므로서 효과적인 소송대책을 수립하고 製品責任保險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기업의 製品責任에 의한 비용부담을 적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기업의 간접적인 製品責任 즉 '企業內部環境保護責任'과 '企業外部環境保護責任'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이다. 이들 문제는 제품생산에 큰 영향을 주는 作業環境 조건과 產業災害 문제 그리고 제품생산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과 산업 폐기물 문제, 제품사용후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즉 環境污染 문제 등을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들 주제는 앞으로 넓은 의미의 製品責任 문제로서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결국 이 문제가 모든 消費大衆의 '生活의 質' (Quality of Life)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대두되는 製品責任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고찰해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조업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다. 제조업자는 그들이 시장기구를 통하여 출고한 모든 제품에 대한 각종 광고행위와 분배조작을 통한 모든 製品責任行為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마아케팅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자나 공급업자가 져야 할 구체적인 製品責任行為는 保證行為, 懈慢, 完全責任, 그리고 잘못된 설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로 제조업자와 도매상, 소매상 (특히 대형소매상)을 포함하는 공급업자들의 製品責任行為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므로서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자들의 제품판매에 기인하는 신체

상의 피해나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이들이 마아케팅 면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과연 그 책임을 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와같이 製品責任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이는 保險料率, 소송상의 和解與否, 클레임 관리비용, 법적비용, 기소된 클레임의 수 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또한 製品責任의 문제는 產業用財의 제조업자 입장에서 볼 때 클레임의 수는 적게 대두되지만 消費者財 제조업자보다 재산상의 피해나 신체적 피해면에서 클레임이나 法的起訴문제에 의한 잠재적 피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이다. 아울러 製品責任 문제로 인해 가장 빈번히 클레임에 노출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電氣·電子製品을 비롯하여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의약품, 의복류, 산업용 기계등으로서 이와 같은 분야의 기업체들에 대한 법적 규제 내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 다양화는 소비자를 정지된 標的(Fixed Target)에서 움직이는 標的(Moving Target)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로 선진국의 대열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脱工業化의 물결에 휩쓸리게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제품자체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통신, 수송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나아가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유통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른 速度의 經済性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글로벌(Global)化 경향은 우리기업들의 경영정책에 일대 전환점을 부여하는 '機會'로 대두된 동시에 '威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주요 선진국의 製品責任에 관한 제도 및 운영실태

1) 美國

(1) 製品責任의 一般的動向

미국에서 생산자 책임의 접근 법리는 전통적으로 過失責任論에 의하여 적용되어왔으며 그후 담보책임 및 과실없이도 책임을 지우는 無過失責任 등 3가지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① 過失責任論

전통적으로 영미에서 生產者 責任訴訟은 법행위상의 過失責任을 적용하여 왔다. 그후 擔保責任論과 無過失責任論의 등장으로 過失責任論의 기능은 다소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過失責任論은 생산물 책임소송의 기초가 되고 있다.

전통적 過失責任論에서 賣渡人의 過失責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賣渡人과 買受人 사이에 契約 嘗事者關係(Contractual Privity)가 있어야 하는데 상품의 생산자와 최종소비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관계가 없으므로 생산자에게 過失責任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過失責任에서는 그 過失의 입증을 피해자가 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입증이 안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過失責任에 있어서도 立證責任의 전환이론이나 事實推定의 원칙에 의하여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치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過失責任論에 의한 피해자 구제는 소극적인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다.

② 擔保責任論

擔保責任論도 過失責任論과 함께 생산자책임론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원래 영미법에서는 動產의 賣渡人은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하여 잘못 표시하여 買受人이 피해를 입는 경우 賣渡人은 買受人에 대하여 損害賠償責任이 있다고 한다.

擔保責任論은 賣渡人이 상품의 부실표시에 대하여 認知여부,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는 無過失責任理論이다. 擔保는 賣渡人의 買受人에 대한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擔保責任의 초기 이론에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계약 당사자관계가 요구되었으나 유명한 맥퍼슨사건(1916년)이래 계약 당사자관계는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③ 無過失責任論

製品責任에서 無過失責任이란 생산자가 상품생산의 준비나 판매과정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없이도 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에서 無過失責任의 법리는 이미 다른분야에서도 인정되어 왔던 개념이다. 예컨대 사육중인 위험한 동물이 도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줄때 그 소유자나 관리인은 無過失責任을 부담하게 되며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 無過失責任을 부담하여 왔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無過失責任의 경우에도 생산자의 無過失責任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에 결함이 있어야 하고 그 결함과 피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래 상품의 대량생산·대량판매의 유통구조하에서 소비자나 이용자는 개개의 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복잡한 상품의 구조상으로 보아도 소비자나 이용자가 그 결함을 발견하기란 극히 어려운 것이므로 결함상품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생산자가 無過失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는다고 보게 된 것이다.

製品責任에 있어서 책임을 결정하는 요소는 상품의 결함이다. 그러나 통일된 결함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아직도 확정된 기준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기 이전에는 결함의 결정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나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할수록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결함을 결정하기란 더욱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동안 製品責任 소송에서 나타난 판례에서 보면 결함의 분류를 ①구조상의 결함 ②설계결함(Design Defect) ③위험에 대한 예고의 결함(Failure to Warn) ④개발도상의 결함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구조상의 缺陷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설계상의 결함, 위험에 대한 예고의 결함, 개발도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같이 製品責任 소송에서 결함의 결정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2) 日本

일본의 裁判制度는 (그림 4-1)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最下級인 即決裁判所는 少額의 民·刑

事 사건을 다룬다. 地方裁判所는 미국의 聯邦裁判所와 유사하며 家庭裁判所는 가정문제와 소년범죄사건을 다룬다. 이 단계에서의 上訴는 高等裁判所로 移送되는 데 이는 미국의 公訴裁判所와 같다. 최종단계는 最高裁判所이다.

일본기업의 法的 環境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규제법안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점령기에 연합군사령부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규제법안들과 아주 유사하였으나 수년이 경과하면서 이 法案들은 일본의 문화, 전통,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변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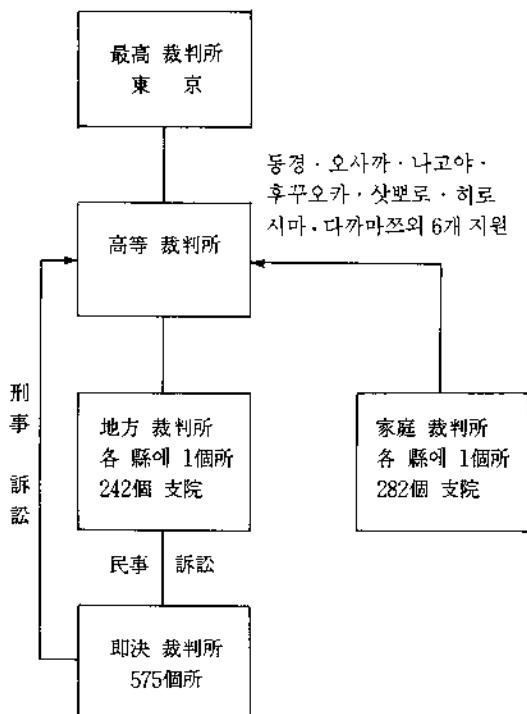
일본의 法律的 節次는 미국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행정당국과 관료들은 새로운 法案制定 과정에 상호 밀접하게 관여한다. 일본의 기업인들은 미국의 기업인들보다 더욱 政府官僚層에 접근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의 기업인들은 로비활동과 정치적인 행동 참여, 행정적 청문회 등의 수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일본기업들보다 더 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은 紛爭의 해결을 위하여 仲裁나 和解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기업활동에 관계되는 문제까지 그 분쟁해결 방법으로 이러한 비공식적 수단을 선호하며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분쟁해결 방법은 미국인들의 그것과는 아주 대조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고도로 발달된 공업국 가이지만 아직까지 缺陷生産物法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判例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론(709조)에 따라 製品責任理論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학설상으로는 契約責任說도 유력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缺陷生産物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으나(예컨대 가네미 油症사건, 스몬사건) 消費者의 被害救濟에 대해서는 법원보다 국립생활센터나 각 지방의 소비생활센터에서 활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관을 통하여 消費者의 被害救濟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이 법원까지 가는 경우에도 和解로 해결되는 것이 많다고 한다.

3) EC 諸國

(1) 유럽의 統一 製品責任 法案

법률의 國제화는 점증하는 인구이동과 세계경제 성



자료 : Meiners, R.E., and Ringleb, A.H.,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2nd ed., St.Paul:West Publishing Co., 1985. p.630.

〈그림 4-1〉 日本의 裁判制度

장율의 증가로 인해 매우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은 법률의 형태와 효과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국제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공동체의 法律 標準化작업이다. 이는 EC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도 기인하지만 시장의 국제화와 글로벌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C이사회는 1985년 7월 25일 '생산物缺陷의 責任에 관한 會員國 法律의 통일화에 관한 立法指針'을 의결하고 1985년 7월 30일 회원국에 공고되었다. 이 指針에 따라 EC가맹 12개국은 이 指針이 공고된 후 3년 이내인 1988년 7월 30일까지 이 指針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을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이 指針의 특징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자에게 無過失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

다는 것이다(제1조). 이 指針에 따라 기한내에 법령을 제정한 국가는 영국·이탈리아·그리스 3개국에 불과하였다.

영국은 1987년에 '消費者保護法(Consumer Protection Act : 1987년 5월 15일 공표 ; 3월 1일 시행)'을 제정하고 이탈리아는 1988년에 '缺陷生産物責任에 대한 이탈리아 공화국 大統領令 제224호(1988년 5월 24일 공포 ; 1988년 7월 30일 시행)'를 공포·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는 1988년에 '經濟省·司法省·商務省 및 산업에너지 技術省에 의하여 缺陷生産物 責任에 관한 施行令(1988년 3월 31일 제정 ; 1988년 7월 30일 施行)'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統一 製品責任法案(EC指針)이 1985년 7월 25일 EC關稅理事會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가맹 12개국(벨기에, 뱃마크, 서독,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은 이후 3년내에 본 指針內容에 다른 국내법을 정비하고 시행토록 되고 있다.

EC指針(Directive)이란 소위 EC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EC執行委員會가 원안을 작성하고 EC關稅理事會(가맹국의 대표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안건에 따라 외무, 상공, 농림, 교통, 재무 등의 각 장관이 출석한다)가 유럽의회,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EC가맹 각국에 대해서 강제력을 갖는 것이 특색이다.

이번에 성립된 EC指針의 내용은 無過失責任主義의 채택을 비롯하여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엄격한 것이지만 동시에 당초 원안에 대해서 몇 가지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 처음의 목표보다 대폭적으로 수용된 비교적 온건한 내용이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통일된 하나의 시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1970년대 전반부터 製品責任에 대하여 통일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 목적은 유럽지역내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촉진 및 消費者保護의 3 가지이다. 이를 위한 접근으로서 CE (유럽 심의회: 21개국이 가맹)에 있어서의 製品責任條約에 따른 방법과 EC指針에 따른 방법의 2가지가 고려되어 양자의 작업이 동시에 병행하여 추진되었다.

(2) 유럽 標準化의 特徵

① 品質システム 認證制度 - ISO 9000 시리즈

유럽 標準화(EC 규격 통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의 임의적 성격의 국가별 규격과 認證制度는 그대로 두고 강제적 성격의 技術規定과 이에 의거한 認證制度를 통일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다.

EC 指針에 의해 채택되는 유럽규격의 내용을 보면 EC域內에서 안전, 위생, 環境保全, 消費者保護 등 公共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한다는 명분하에 EC 指針이나 유럽규격의 내용이 각국별로 시행되던 때보다 기업이 더욱 지키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으며 認證對象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를 규격과 認證制度가 유럽의 기술이나 경제상황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고 또한 그 과정이 域外 국가들에게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域外 국가들에게는 技術障壁이 된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또한 기존의 각국별 技術規定, 규격 및 認證制度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技術障壁이 늘어나는 셈이 된다. 또한 認證制度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안전과 관련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認證을 획득하면 되었으나, 일부 EC 域內國家에서만 실시하던 「품질시스템 認證制度」(ISO-9000 시리즈에 의한 認證制度)가 강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EC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製品認證 뿐만 아니라 '품질시스템 認證'도 받아야 할 차지에 놓이게 되었다.

技術的 標準에 관한 指針은 다음의 4가지 기본 원칙하에 수립되어 있다.

- 법률적 일치는 필수안전요건의 채택에 있어서만 제약을 받는다.
- 필수안전요건은 標準화지역내의 管轄權內 국가의 技術的 示方書에 의해 보완된다.
- 기술의 示方書, 즉 유럽표준이나 국가 또는 국제 표준 등은 강제성이 없고 그들 자체 標準維持를 인정한다.
- 정부당국은 유럽標準에 일치하는 제품의 제조의 무를 인식해야 한다.

EC는 認證制度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EC 指針에의 적합성 평가방법을 정리·분류한 8개의 모듈

을 1990년 말에 채택한 바 있다. 이 모듈은 상품별로 달리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은 모듈별 적용상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② 유럽 標準화와 消費者被害 救濟

유럽 標準화의 특징을 소비자피해의 구제측면에서 살펴보면 규격과 認證制度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 규제제도로 볼 수 있으며 일단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의 被害補償制度로서는 製品責任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EC의 製品責任제도는 미국과 같이 嚴格責任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미 영국, 프랑스 등 일부국가는立法을 완료하여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立法화를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EC각국에서 유통·소비되는 제품으로 인해 人的·物的事故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로서는 賠償을 해주어야 하며 만일 대형사고에 휘말리면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C 指針에서는 제조사가 상품에 대해 강제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상품의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技術規定이나 규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製品責任法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셈이 된다.

③ 유럽 標準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유럽 標準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을 들면 유럽 각국의 규격이 단일규격으로 통일됨에 따라 對유럽 수출상품이 단순화되어 규모의 경제성에 의해 생산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또 EC 認證制度의 통일적 추진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유럽의 각국별로 認證을 받아야 되던 것이 가장 認證을 받기 쉬운 국가를 선택하여 認證을 받으면 유럽의 어느 나라나 통용될 수 있으므로 認證獲得을 위한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附帶費用이 절감될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들면 유럽규격이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통일되고 규격의 내용이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으로서는 새로운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이 요청되며 경영환경도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경쟁력 위주로 변하게 된다. 이는 EC 지역 또

는 EC 域外지역의 우수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뜻도 되어 불리한 요소가 커졌다고 보아야한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국내 대기업은 어느 정도 경쟁체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되나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리라 본다. 이와 함께 EC에서 ISO 9000 品質システム 認證制度를 강제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EC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④ 유럽 標準化에 대한 우리나라 企業의 對策

유럽 標準화의 진전은 세계 각국의 표준화활동과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EC 국가들은 국제무역에 있어 技術示方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규격을 제정할 때 그 制定機關인 國際標準化機構(ISO) 및 國際電氣技術委員會(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s)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ISO, IEC 등 國際規格이 유럽지역 국가들의 規格에 편향되게 만들어져 왔다. 그리고 앞으로 EC 및 유럽 自由貿易聯合(EFTA) 18개국이 ISO 및 IEC의 활동에서 'JTC 1'으로 표준을 통일시켜서 國際標準化活動에 있어 그 입김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며 국제무역에 있어서 EC에서 제정하는 유럽 規格의 권위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유럽 標準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점과 그 진전이 域外國에게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EC 통합에 대응하여 기업측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우선 관련정보의 입수 및 사전적 대응이다. 이와 함께 기업내에서도 社內標準化를 철저히 하여 국제적 수준의 品質保證體系를 갖추고 또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고 유럽의 技術障壁을 무난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6. 結論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규칙들에 대한 것을 살펴 보았다. 그 규칙은 의회, 법정, 기타 다양한 국제적 기관들이 법적 규제의 범위를 결정하여 왔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이

나 技術水準, 法律아래서 허용된 내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따라,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들 규제의 범위는 변하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불분명한 것은 법률이나 관습적 기업활동으로 정해지지 않은 행동규칙 즉 企業倫理와 社會的 責任, 經濟的 正義實現, 政治와의 유대관계 등이다.

이러한 기업의 社會的 責任과 經濟的 正義實現에 대한 문제는 社會的 富의 문제이며, 도덕적으로 볼 때 社會的 富의 극대화는 이것이 정당하거나 선한 의지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상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이 社會的 富를 증대시키는지 여부를 가지고 도덕성을 판단하게 된다. 단순한 부의 극대화는 개인의 행위의지와 지불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도덕적 정당성을 대신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집단적인 의사결정 즉 사회 전체의 共感帶(Social Consensus)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도나 법률시스템은 다른 대안적 제도나 시스템에 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그리고 원치 않는 것을 더욱 적게 제공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제적 행위에서 파생되는 法律的 葛藤(Legal Conflicts)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을 증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效率性은 상황에 따른 비용의 總和와 편의의 總和간의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기업윤리는 기업종사자들이 그들의 일상업무나 경험상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간단명료한 해답이 있을 수 없고 행위에 대한 허용된 일정한표준이나 규칙도 불분명하다. 企業意思決定上의 倫理的 문제에 대한 본보기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가지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얼마나 광범위한 社會的 關心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법위의 문제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利潤의 極大化(Profit Maximization)에서 社會福祉의 極大化(Social Welfare Maximization)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업은 비용증대, 이익저하, 가격인상이 없이는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다.

참고문헌

1. 工業振興廳, 製造物責任에 관한 調査研究, 서울, 1989.
2. 환경운동, 서울, 1994.2.
3. H.L.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rvard Law Review, Vol.104, 1991.
4. Kolb, John., Ross, S.S., Product Safety and Liability, McGraw-Hill, New York, 1980.
5. Meiners, R.E., and Ringleb, A.H., The Legal Environment of Business, 2nd ed., St.Paul: West Publishing Co., 1985, p.33.



주용준(朱勇俊)

1956년 12월 28일생.

1981년 고려대학교 공대 산업공학과 졸업.

1981-1985 대림엔지니어링 Project 관리 부 근무.

198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 졸업(공학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재 중경공업전문대학 공업경영과 채직.

관심분야 : 시스템최적화, 퍼자이론 및 응용, 유전자알고리즘.

No.3, p.525, 1975.



강신민(姜信民)

1946년 10월 4일생

1971년 고려대 정경대 경제학과 졸업
1974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1992년 한남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 : 우리나라 電氣·電子產業의
製品責任에 관한 研究 기타 논문 다수
현재 중경공업전문대학 공업경영과 교수
(대전 : 629-6371)